

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9. 7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었거나 실효성 및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가. 유원지안에서의 부지등의 사용허가, 허가취소, 권리양도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.
- 나. 전염병 질환자동 유원지안에 입장자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12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사용허가) ①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부지의 사용</p> <p>2.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</p> <p>3. 물품판매 등 상행위</p> <p>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.</p> <p>제7조 (허가취소등)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	<p>&lt;삭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</p> <p>2.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</p> <p>3.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차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</p> <p>4.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</p> <p>5.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질서 행위를 문란케 한 때</p> <p>6.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</p>	
<p><u>제8조 (권리양도의 제한등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삭제>
<p><u>제12조 (입장거절 및 퇴장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	<삭제>
<p>1. 전염병 질환자</p> <p>2. 수수료납부를 거부하는 자</p> <p>3.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자</p> <p>4. 자연환경 오손 또는 공공시설을 해손하는 자</p> <p>5.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유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	
<p><u>제13조 (수수료의 환불)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u></p>	<p>제13조 (수수료의 환불) ----- ----- &lt;단서삭제&gt;</p>